

중국 식품 인허가제도 현황 분석

자료 작성 : aT 상하이지사

- 크로스보더(역직구) 전자상거래, 유기농, 영유아조제분유, 가공 인삼제품 인증 현황 분석
- 각종 인증 제도에 대한 절차, 소요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한 상세 정보 기술

□ 중국 식품 인허가 제도 현황

○ 인증 대상

- 중국의 식품 관련 인증대상은 크게 4가지 대분류(일반식품, 보건식품, 영유아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소분류별로 인증 필요 내용이 서로 다름
- 쌀, 삼계탕 등 작년에 검역이 풀린 품목의 경우에도 대중국 수출시 생산공장이 중국 CNCA(중국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에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듯 사전에 인증 필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식품 관련 인증대상 현황 >

대분류	소분류	세부 품목	인증 필요 내용
일반식품	일반 가공식품	캔류, 과자류, 음료류, 장류 등	사전 인증 필요 없으며 통관 시 중문 라벨 등록, CIQ 검사검역 등 진행 필요
	예포장 유제품	생크림, 우유 등	통관 전 유제품 생산공장의 중국 CNCA 사전 등록 및 GB 테스트 시험 성적서 사전 취득 필요
	식용유	올리브유 등	통관 전 GB 테스트 시험 성적서 사전 취득 필요
	쌀	현미, 정미	통관 전 쌀 생산공장의 중국 CNCA 사전 등록 필요
	예포장 육류제품	삼계탕	통관 전 삼계탕 생산공장의 중국 CNCA 사전 등록 필요
	예포장 수산제품	조미김, 전복통조림 등	통관 전 수산물 생산공장의 중국 CNCA 사전 등록 필요
	과일	포도	검역허가 사전 취득 필요, 현재 검역허가 취득한 품목: 포도
	채소 (생/냉장)	신선	검역허가 사전 취득 필요, 현재 검역허가 취득한 품목 : 생/냉장 배추, 생/냉장 당근, 생/냉장 팥이버섯, 생/냉장 무, 생/냉장 양파, 생/냉장 아가리쿠스버섯, 생/냉장 브로콜리, 생/냉장 새송이, 생/냉장 캐비지(양배추)

대분류	소분류	세부 품목	인증 필요 내용
보건식품	특정 보건기능을 갖춘 식품	피로해소기능식품, 혈중지질개선기능식품 등	CFDA 등록 허가 사전 취득 필요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칼슘보충제 등	CFDA 비안 허가 사전 취득 필요
영유아 식품	영유아보조식품	영유아	통관 전 GB 테스트 시험 성적서 사전 취득 필요
	영유아조제분유	0-36개월 영유아 분유	2018년 1월 1일 부터 CFDA 등록 허가 사전 취득 필요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당뇨환자식품 등	2018년 1월 1일 부터 CFDA 등록 허가 사전 취득 필요, 현재 GB 테스트 시험 성적서만 사전 취득 필요

○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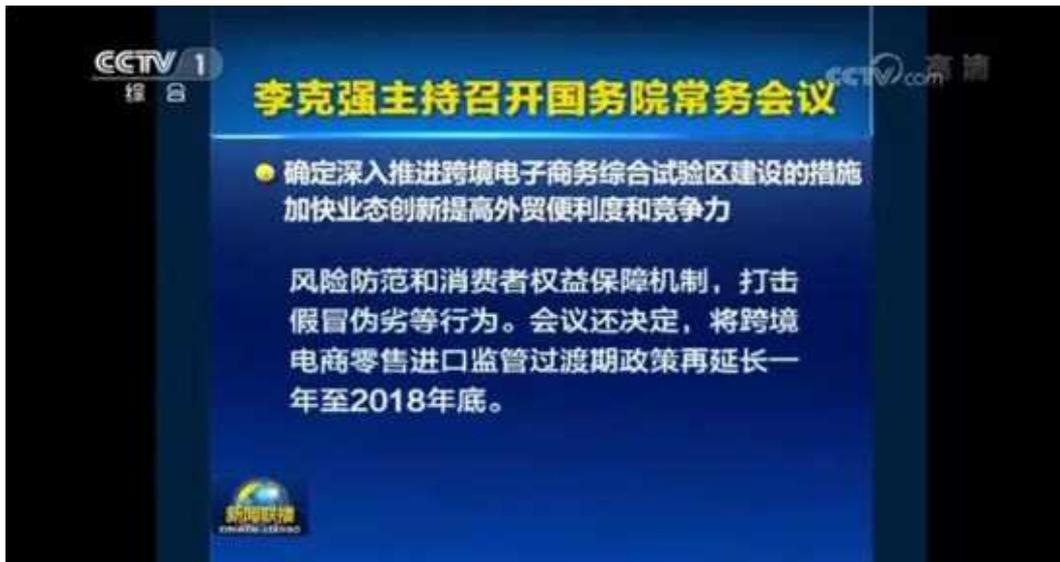
- 각 분류 또는 세부품목별 관리방법 등이 제정되어 있어 자사 제품이 어느 법 또는 통칙에 규제를 받는지 그리고 규제사항은 무엇인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 필요

< 식품 관련 각종 규제 현황 >

규제	해석
『수입 식용 식물성기름 검사감독요구에 관한 설명』	- 식물성 기름의 경우, 국가강제표준에 정한 항목의 시험 성적서 통관 전 준비 필요
『수출입동식물검역법』	- 한국 동식물(과일, 야채 등) 첫 중국 수출시 검역 허가 취득해야 수출 가능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 수산물 수출 전 수산물 공장 등록 진행 필요, 공장 심사 관련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검사와 수출계를 통해 진행 가능
『수출입육제품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 한국 육제품 중 삼계탕 검역 허가 취득 완료, 2016년 5월 9일 삼계탕 생산업체 목록 중국 CNCA 홈페이지에 공시 완료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관리방법』	- 제품에 신식품원료, 신식품첨가제를 첨가했을 경우, NHFPC에 비준 신청 필요 (이 경우 매우 어려움으로 배합 변경 권장)
『보건식품등록비안관리방법』	- 보건식품 수출 전 보건식품 등록 허가 취득 필요, 2016년 7월 1일부터 영양소보충제 비안제 실시(규제완화)
『예포장식품라벨통칙』 『예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 모든 예포장식품 중문라벨 및 영양라벨 필요(매일 섭취량10g/10ml 이하의 제품 또는 알코올함량 0.5% 이상의 제품 등 영양라벨 면제 가능)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 방법』	- 유제품 수출 시 유제품 공장 사전 등록 진행 필요, 그리고 전 항목 시험성적서 통관 전 준비 필요 - 유제품을 제외한 기타 영유아 식품 국가강제표준에 정한 항목의 시험성적서 통관 전 준비 필요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 2016년 10월 1일부터 법규 정식시행이지만 2018년 1월 1일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이 있고 2018년 1월 1일부터 off-line 판매되는 모든 영유아조제분유는 CFDA 배합등록 필수

□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¹⁾ 인증

○ 근거: 2017년 9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 관련 결정



○ 결의 내용

- 2017년 9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 내용에 따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인증 실시 관련 기존 2017년 말까지의 유효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
-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까지는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칭다오(青島) 등 시범도시의 경우 해외 직구한 상품이 보세지역으로 들어오면 CFDA 인증, 통관 검사 및 검사검역 증명서 없이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 (육제품, 신선한 채소, 과일 등 동식물검역 사전 허가 필요한 제품 제외)

○ 인증 실시 배경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상품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2016년 4월 8일부터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신규 정책 추진
 - 신규정책 안에는 해외 직구 관련 업체들이 화장품 CFDA 위생증서, 보건 식품 CFDA 등록/비안 허가증서, 영유아조제분유 CFDA 배합등록증서,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검사검역증명서, 중문 라벨 등 통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 2019년부터는 필요시 각 품목별 다소 까다로워진 통관서류를 제출해야만 정식통관된 후 자사제품을 중국소비자에게 배송이 가능

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외직구나 역직구처럼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어 상품을 매매하는 방식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시장 현황

- 다국적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총액은 3조 6,000억위안(약 608조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한 규모라고 언급
- 한·중 간 사드 문제로 중국 통관 검사 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수출업체에게 합법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제공
- 인기품목: 베이비유아상품, 뷰티 케어 상품, 건강헬스케어상품 등

< 대표적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개 >

분류	소개	입점 주의 사항
티몰(天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오바오와 함께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대표 쇼핑몰 - 중국 최대의 B2C 쇼핑몰, 시장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업계 1위 업체 - 2016 연간 총거래액 254조원, 동기대비 24.0% 성장 - 2016 연간 활성 사용자 수 4.5억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까다로운 조건, 복잡한 절차 및 높은 입점 수수료 등으로 중소기업의 단독 입점 장벽이 높음 - 입점 후 현지 마케팅(엔진 내 브랜드 광고, 키워드 광고, 웨이브의 기업 계정 마케팅, 웨신 마케팅, 쇼핑몰 내 배너광고 등)의 비용 감안 필요
징둥닷컴(京東商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2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포춘 500대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기업 - 중국의 2대 B2C 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중 최대규모 물류창고 보유 - 시장점유율 약 20%를 차지하는 2위 업체 - 2016 연간 총거래액 167조원, 동기대비 54.8% 성장 - 2016 연간 활성 사용자 수 2억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입점보다 입점 완료한 emart, interpark, NHonghyup 등을 통해 제품 판매 추천

□ 유기농인증



C:100 M:0 Y:100 K:0
C:0 M:60 Y:100 K:0

- 근거 :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유기농제품인증관리방법(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 한국과 유기 인증 상호 인증 여부: NO

- 한국 내에서 유기농 식품 인증을 획득했다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재차 중국 내 유기농 인증을 획득 필요
- 수출 시 중국 유기농 인증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외포장 및 중문 라벨에 유기농 관련 문구 표시 또는 암시가 불가하며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 또는 판매 금지

○ 인증 주관 기관: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시험· 인증 기구 : 85개 지정 기구

기구번호	기구명	기구 주소	연락처	담당자
CNCA-R-2002-051	上海挪亚检测认证集团有限公司	上海市浦东新区锦绣东路277 7弄26号3层	021-50430897	陈瓊元
CNCA-RF-2002-07	上海天祥质量技术服务有限公司	上海市徐汇区宜山路889号齐来工业城2号楼6楼	021-61194005	邢明明
CNCA-R-2004-136	中食联盟(北京)认证中心	北京市崇文区外大街9号正仁大厦八层	010-67091549	赵尔萍
CNCA-R-2002-021	华夏认证中心有限公司	北京市海淀区北四环中路211号太极大厦七层	010-51615822	王靖
CNCA-R-2002-038	北京世标认证中心有限公司	北京市海淀区德胜门外西大街15号, 远洋风景8-2-6层	010-82295677	高岚
CNCA-R-2002-053	北京恩格威认证中心	北京市朝阳区望京阜通东大街方恒国际C座18层	010-64802311	曾见
CNCA-R-2002-020	北京中大华远认证中心	北京市东城区阜外大街乙22号415室	010-68396415	杜同

*기타 기구 정보는 링크된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 <http://ffip.cnca.cn/ffip/publicquery/certSearch.jsp>

○ 인증품목

-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유기인증 품목 리스트에 올라간 품목만 가능
- 현재 127종류의 제품이 있으며 대부분 식품(곡물류, 육제품, 수산물, 견과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가공식품, 주류 등)이고 일부 식용 약재, 방직물, 동물용 사료 등도 있음

○ 인증 절차

- 신청 자료 제출 → 서류 심사 및 접수 → 계약 및 초기 비용 납부 → 현장 검사 및 평가 → 조사보고서 작성 → 종합 심사 평가 의견 작성 및 인증위원회 심의 → 유기농 코드 부여, 증서 발부
- * 모든 인증 취득한 유기농 제품의 코드는 중국식품농산품 인증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유기농인증 예시 >



有机食品认证证书 (中文)



有机食品认证证书 (英文)

○ 유기농인증 소요 시간 및 비용:

분류	비용	소요시간	비교
유기농인증	1. 인증비: 2-5만원 2. 기타: 심사원(≥ 1명)의 숙박비, 식비 및 교통비 등 * 토양, 수질, 대기 등 검사비 업체 자체 부담 필요, 관련 검사 현지 시험기관에 의뢰 가능	1. 초기준비&계약(1~2개월) 2. 현장검사 : 2~5일 3. 심사&인증서 발급(1~2개월)	제품 및 생산지 규모에 따라 비용 및 소요 시간 변동 가능

○ 유효기간 : 1년

- 1년마다 인증 연장 신청 필요, 현장검사, 종합심사 등이 전부 필요하며 최초 유기식품 인증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함

○ 제출서류

- 유기식품인증신청서, 유기식품인증조사표
- 인증 신청기업은 합법적인 경영자격이 있다는 문서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사용권증명 등 포함)
- 생산지 위치도(소재지의 행정위치도, 땅의 분포, 생산지 외관, 면적, 주변 토지사용 현황 등), 가공장소 주변 환경 묘사, 공장 평면도, 생산 공정도
- 금년도 생산지 환경 검사보고서(토양, 수질, 대기검사 보고서, 현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 가능)
- 유기 제품 생산, 가공 계획, 생산 및 경영 작업지시서 등

□ 영유아조제분유 인증



- 근거 :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6호)
- 배경 : 2016년 1월 ‘ 영유아용 조제분유 배합등록관리 규정(안)’ 을 WTO/TBT 통보 후 미국, 유럽, 호주,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의견을 접수하였고 여러 국가의 관련 기관들이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 방법의 제정에 대해 중국 AQSIQ와 직접 의견 교환 진행

○ 필요성

- 식품안전품질 문제 속출 및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의 난립으로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중국 내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 수는 약 2,000여개에 달하며 상당수의 업체가 동일한 배합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브랜드로 판매
- 둘째 출산 허용 정책의 시행으로 영유아 분유의 품질 안전문제에 대해 폭 넓은 관심을 받게됨
 - 많은 나라가 이익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배합 등록관리방법 시행

○ 시행 : 2016년 6월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확정 발표, 2016년 10월부터 시행, 일정한 유예기간 거친 뒤 2018년 1월 1일부터 실제 시행

-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산 영유아조제분유는 CFDA 등록 허가를 취득한 후 판매 가능
- 0~6개월은 1단계, 6~12개월 2단계, 12~36개월 3단계로 구분
- 생산업체별 3개 브랜드 및 9개 배합 초과 판매 불가

○ 인증 주관 기관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 인증 소요 시간 및 비용:

분류	비용	소요 시간	비교
영유아 조제분유	CFDA 인증비: 0위안	6~12개월	대행비:3~20만 위안

○ 유효기간 : 5년(만기 6개월 전에 CFDA에 연기 등록 신청 및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인증 절차

- 서류 준비 및 접수
- 기술 심사(60일+30일)
 - * 심사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 샘플검사 및 전문가 논증 등 진행가능, 현장검증, 샘플검사 등 소요시간 별도 계산 필요, 보완 서류 요청 시 3개월 내 보완 필요

- 기술 심사 결과 통보
- 재심 신청(기술 심사 불합격 통보 받은 후 20일 내)
- 행정심사 및 최종 등록 허가 여부 통보(20일)
- 등록증 발급(합격 시)
- * 등록 완료한 해외 업체 목록(2017.09.15.까지) : 총 39개 업체 등록 완료, 이중 중국산 32개, 외국산 7개

기업명칭	제품명	등록번호	등록 완료 날짜
Nestlé@Deutschland AG	超后能恩 영유아조제분유 (6—12개월, 2단)	国食注字 YP20175049	2017.09.14
	超后能恩 영유아조제분유 (12—36개월, 3단)	国食注字 YP20175050	2017.09.14
Canpac International Limited	安满满儿 영유아조제분유 (0—6개월, 1단)	国食注字 YP20175046	2017.09.14
	安满满儿 영유아조제분유 (6—12개월, 2단)	国食注字 YP20175047	2017.09.14
	安满满儿 영유아조제분유 (12—36개월, 3단)	国食注字 YP20175048	2017.09.14
Ausnutria Dairy (C hina)Company Ltd.	美纳多 영유아조제분유 (0—6개월, 1단)	国食注字 YP20170224	2017.09.14
	美纳多 영유아조제분유 (6—12개월, 2단)	国食注字 YP20170225	2017.09.14
	美纳多 영유아조제분유 (12—36개월, 3단)	国食注字 YP20170226	2017.09.14
Arla Foods amba Arinco	宝贝与我® 영유아조제분유 (0—6개월, 1단)	国食注字YP201 75051	2017.09.14
	宝贝与我® 영유아조제분유 (6—12개월, 2단)	国食注字 YP20175052	2017.09.14
	宝贝与我® 영유아조제분유 (12—36개월, 3단)	国食注字 YP20175053	2017.09.14
Synutra Internation al, Inc.	优博剖蓓舒 영유아조제분유 (12—36개월, 3단)	国食注字 YP20175039	2017.09.13
	优博瑞慕 영유아조제분유 (0—6개월, 1단)	国食注字YP201 75040	2017.09.13
	优博瑞慕	国食注字	2017.09.13

기업명칭	제품명	등록번호	등록 완료 날짜
	영유아조제분유 (6—12개월, 2단)	YP20175041	
	优博瑞慕 영유아조제분유 (12—36개월, 3단)	国食注字 YP20175042	2017.09.13
Nutricia Cuijk B.V.	诺优能 영유아조제분유 (0—6개월, 1단)	国食注字 YP20175019	2017.08.10
	诺优能 영유아조제분유 (6—12개월, 2단)	国食注字YP201 75020	2017.08.10
	诺优能 영유아조제분유 (12—36개월, 3단)	国食注字 YP20175021	2017.08.10
Milupa GmbH	爱他美 영유아조제분유 (0—6개월, 1단)	国食注字 YP20175022	2017.08.14
	爱他美 영유아조제분유 (6—12개월, 2단)	国食注字 YP20175023	2017.08.14
	爱他美 영유아조제분유 (12—36개월, 3단)	国食注字 YP20175024	2017.08.14

○ 수입 현황

- 2016년 중국 영유아조제분유 수입량은 22.1만 톤에 달하였으며, 동기대비 25.6% 증가
- 수입 영유아조제분유는 주로 18개국(지역)으로부터 수입, 그중에 유럽연맹, 뉴질랜드와 한국의 무역액이 제일 많았음

□ 가공 인삼 제품 중국 수출



○ 인삼 제품의 중국 정부 기관 관련 공고

- 2012년 중국 위생부는 5년근 및 5년근 이하의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였으며, 2013년 ‘ 신식품원료’ 로 수정, 이로부터 인삼을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가능 (위생부 2012년 17호 공고)

- 하지만 2012년 인삼을 ‘ 신자원식품’ 으로 첫 등록 신청 시 중국 동북 지방 관련 기관이 동북 지방의 인삼을 샘플로 신청했기 때문에 동북지방 인삼과 종류, 성질, 성분, 생물학 특성 등이 일치해야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

○ 한국산 인삼/홍삼 제품이 해당 공고에 적용 가능 여부

- 인삼을 찌서 건조시킨 홍삼은 중국 일부 지역에 신식품원료 표준에 적용 가능
 - 중국 최대 인삼 재배지인 길림성의 지방 표준 "DBS22/024-2014 길림성식품안전지방표준식품원료용 인삼" 에 따르면 홍삼도 이 표준에 적용 가능
- 한국인삼(고려인삼)은 동북인삼과 같은 종류에 속하고,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 하지만 NHFPC 공고에 홍삼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홍삼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이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수출 전 사전 확인 필요

○ 위생부 2012년 제17호 공고

- 명칭 : 인삼(인공재배)의 신자원식품 등록 허가 공고
- 시행 날짜 : 2013년
- 표준 해석 기관 : NHFPC
- 관련 요구 사항

중문명	인삼(인공재배)
라틴명	Panax Ginseng C.A.Meyer
기본 정보	5년 및 5년 이하 인공 재배한 인삼 종속: 두릅나무과, 인삼류 식용 부위: 근 및 근경(根莖).
섭취량	≤ 3g/일
기타 설명 필요 사항	1. 위생안전지표는 중국 관련 표준 요구에 부합 필요 2. 임산부, 수유기 여성 및 14세 이하 아동 식용 불가, 라벨과 설명서에 식용 불가 대상 및 섭취 제한량 표시 필요

○ 주의 사항

- 인삼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유통할 경우, 일반식품의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캡슐 등 형태로 유통 불가능

○ 등록 비용 및 시간

- 일반식품의 경우 라벨 등록 진행, 1~3개월 정도 소요, 비용 100~300만원
- 보건 식품의 경우 CFDA 등록 필수, 2~4년 소요, 비용 5,000~15,000만원

라. 인증 기관

<p>CFDA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직속 기관 - 식품(일반식품, 보건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식품 행정허가의 실시방법 작성 및 실시 - 식품 감독관리 제도의 작성 및 실시, 문제 제품 리콜 등 조치 시스템 구축 및 점검 - 보건식품 등록 및 비안 허가 인증기관 - 영아조제분유 배합 등록 허가 인증기관
<p>AQSIQ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직속기관 - 중국 출입경상품검험, 출입경위생검역, 출입경동식물검역, 수출입 식품안전 및 인증인가, 표준화 업무 총괄 - 산하 각지, 각 항구의 검험검역국(CIQ)은 해당 항구에 수출입된 식품의 현장 검사와 검역, 실험실 검사, 중문 라벨 심사&등록 및 출입경검험검역증명서의 발급 진행 - 중국 WTO/TBT 및 WTO/SPS 동향연구, 통보 등 관련 업무 담당
<p>NHPPC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소속 기관 -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작성 및 공포 - 신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신식품 등 식품 관련 신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 및 인정 - 식품안전 시험기관 자질 인정의 조건과 시험 규범 작성에 의견 제공
<p>CNCA (중국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설립한 기관 - 수출입식품 (유제품,수산물,육제품, 제비집)의 생산, 가공업체의 위생 등록 심사 및 합격 업체 공시 등의 업무 담당 - 시험 기관/실험실 자질 인정(CNAS 자질 등) - 유기농 인증 제도, 실시규칙, 인증목록의 제작 및 공포 - 유기농제품의 인증, 관리, 감독 및 상호 인증

<시사점>

- 중국 식품 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활로 개척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가 점차 엄격해짐에 따라 각종 인증획득 요건 또한 복잡해지고 전문화됨
 - 따라서, 인증 획득 여부가 중국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또는 장벽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인증 획득 시 국가의 검증을 받은 안전한 식품이미지로 자리매김 가능
 - 상하이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제품·포장·라벨·통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지원이 가능하며 인증획득 필요 여부 또한 확인 가능
 - 필요시 aT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제품에 대한 필요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중국마케팅을 추진한다면 중국시장 개척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 자료원 : 중국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www.cnca.gov.c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www.sda.gov.cn), 亿邦动力(www.ebrun.com)